

2021년 제16회 수원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공고

2021년 제16회 수원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.

2021년 9월 29일
수원시인사위원회위원장

1. 채용분야 및 인원

근무예정서부	채용예정분	채용예정직	채용예정급	채용인원	계약기간	직무내용
홍보기획관	정책홍보	일반임기제급 6		1명	1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홍보행정의 종합계획 수립·운영 주요 정책·현안 사업 전략·홍보 시정 이슈관리 및 정책·홍보 컨설팅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및 현안 신속 전파
인권담당관	시민인권보호관 [남성]	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[주35시간]		1명	1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상담·조사 성희롱·성폭력 고충상담·조사 인권증진을 위한 법 제도 정책에 대한 조사연구 인권영향평가 인권실태조사

※ 임기는 업무실적에 따라 총 근무년수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

2. 근거법령

-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
-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
-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, 제17조, 제21조의3
- 지방공무원 인사규칙(표준안) 제10조
-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(행정자치부 예규)
-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
- 수원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

3. 응시자격 (기준일 :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)

□ 공통 요건
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 및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등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
- 주소지·성별·연령은 제한 없음
-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

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

-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 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 2.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
-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, 파면,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,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 1. 공공기관
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 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
 4.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

□ **세부요건** :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

※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관련 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
(시간선택제임기제, 한시임기제공무원은 10년)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.(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17조 제5항)

채용분야	채용직급	자격 및 경력 요건 기준
정책홍보	일반임기제 6급	1.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.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.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【관련분야 경력】 ・ 정책 홍보 또는 미디어·방송광고 관련분야 실무경력 ※ 해당분야 경력증명서 첨부 (경력증명서에 관련경력이 기재되어야 함)
시민인권 보호관 (남성)	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(주35시간)	1.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.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.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【관련분야 경력】 ・ 인권침해 구제업무 및 인권증진 또는 법무 관련 실무경력 ※ 해당분야 경력증명서 첨부 (경력증명서에 관련경력이 기재되어야 함)

※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및 수원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따라 일반(시간선택제) 임기제 공무원의 상위 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

※ 상기학과와 전공학과의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(첨부양식)를 제출하여야 하며, 서류의 내용에 「우리 대학(원)의 ○○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○○학과와 동일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」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

※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주40시간 미만 근무 시 근무기간 산정은 시간할 계산됨.(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)

4. 시험방법

□ **1차 시험** : 서류전형(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)

※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

□ **2차 시험** : 면접시험(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)

5. 응모요령 및 시험일정

*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가급적 우편접수 요망

□ 원서 접수

○ 접수 기간 : 2021. 10. 13.(수) ~ 10. 15.(금), / 3일간

○ 접수 장소 : 수원시청 별관 합동민원실(별관 1층)

※ 수원역에서 51, 82-1, 92, 92-1버스를 이용하거나 수인분당선 수원시청역에서 하차

○ 접수 방법 :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

▷ 방문접수

- 접수시간 : 09:00 ~ 18:00[점심시간(12:00 ~ 13:00) 제외]

※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접수 불가

- 수원시청 시민봉사과 민원실에서 '수원시 수입증지' 수수료 납부 후 응시원서 제출

※ 5급(가급)이상 1만원, 6~7급(나~다급) 7천원, 8~9급(라~마급) 5천원

- 원서접수 당일 응시를 취소하면 응시수수료 반환 가능(방문접수만 해당)

- 타인이 응시원서 제출 가능

▷ 등기우편 접수

- 원서접수 마감일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함

※ 택배 및 퀵서비스 접수 불가

- 응시분야 직급의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**우편통상환을 우체국에서 구입·동봉**

※ 대한민국 '정부수입인지' 사용불가, 우편통상환은 금융업무로 우체국 마감시간 유의

- 우편주소 :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(인계동) 수원시청 인적자원과 인재채용팀

- 우편봉투 겉면에 '2021년 제00회 수원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원서' 표기

- 우편으로 응시원서 제출시 응시표는 이메일로 회신

※ 이메일 주소 반드시 기재 요망

○ 시험일정 (본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)

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	면접시험 시행 예정일		최종합격자 발 표
	일 시	장 소	
2021. 10. 20.(수) 잔후 (수원시 홈페이지)	2021. 10. 27.(수) 잔후	서류전형 합격자 공고시 장소 공고 (수원시 홈페이지)	2021. 11. 3.(수) 잔후
<p>※ 「면접시험 시행 예정일」은 응시자격 확인을 위한 기준일이며 구체적인 응시분야 시험일은 「서류전형 결과 및 면접계획」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>※ 시험 일정은 서류 접수자 개인별 통지 하지 않으며,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수원시홈페이지(www.suwon.go.kr)에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/p>			

6. 제출서류

□ 응시원서 1통(별지 제1호 양식)

- 응시수수료(수원시 수입증지)는 5급(가급)이상 1만원, 6~7급(나~다급) 7천원, 8~9급(라~마급) 5천원 ※ 수입증지 판매처 : 수원시청 1층 시민봉사과

□ 이력서(별지 제2호 서식) 1부

□ 자기소개서(별지 제3호 서식) 1부

□ 직무수행계획서(별지 제4호 서식) 1부

□ 서류전형 제출서류(별지 제5호 서식) 1부

-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있을 경우 실적 확인서 제출 및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자원봉사활동 실적만 인정

□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의견서(별지 제6호 서식) 1부

□ 자격요건 검증 및 부정행위 처분에 관한 동의서(별지 제7호 서식) 1부

□ 개인정보 제공·이용 동의서(별지 제8호 서식) 1부

□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(별지 제9호 서식) 1부

□ 해당분야 근무 관련 경력증명서(별지 제10호 서식) 각 1부

○ 6개월 이내 발급본 제출

○ 담당업무, 근무기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만 인정.

○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 날인과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.

※ 주당 근무시간 반드시 기재

-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, 회사 경력증명서 양식 상 구체적인 업무 및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반드시 인사담당자 자필 확인 또는 업무분장표 등의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(근무기간, 주당근무시간, 직위(급), 담당업무 기재)

※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,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경력 인정하지 않음,

※ 직장 폐업 등의 사유 발생시,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 추가 증빙서류 제출 가능

- 시간제 근무, 비상근직, 프리랜서, 자원봉사, 시민단체 등 근무 형태나 근무시간이 불규칙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, 근무기간, 보수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함.
미 제출시 경력 인정되지 않음.
- **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 내역서 1부**
 - 국민건강보험공단(www.nhic.or.kr)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(www.ei.go.kr)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
- **학사학위 이상 전체 졸업증명서 1부(고졸은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)**
 - 6개월 이내 발급본 제출
- **채용분야 자격증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(해당자에 한함)**
- **관련분야 연구실적 목록, 외국어능력·정보화 자격증 등 (해당자에 한함)**
 - 어학능력성적표는 공고일 현재로부터 2년 이내의 것만 인정
- **외국어로 기재된 서류는(학력, 경력증명서 등) 반드시 한글번역본(공증필) (해당자에 한함)**

※ 주의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출서류 편철 시 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○ 증명서류는 사본 제출이 가능하며, 발급기관이 모호하거나 해외인 경우 원본 지참 ○ 해외 발급 증명서류는 반드시 한글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 ○ 모든 증명서류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을 제출하여야 함
---------------	---

7. 보수 수준

- **최초 연봉 :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 별표13의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함이 원칙이며,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결정**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 일반임기제 6급 : 51,098천원 ✓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(주35시간) : 51,098천원 ÷ 40 × 35 = 44,711천원

- **복무 및 연봉 외 급여(직급 보조비, 정액급식비, 가족수당, 시간외 근무수당 등)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라 지급**

-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(실업급여)에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(단,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)

8. 기타 유의사항

- 수원시인사위원회에서 동일회차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.
- 시험 관련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,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- 응시원서 상 기재착오 및 누락,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.
-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따라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·변조 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.
- 접수된 응시원서와 제반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학력·경력·자격 증명서를 원본으로 제출한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반환해 드립니다.
-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발표 후 신원조사·채용신체검사·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발급된 증명서류, 경력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연봉외의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되며, 복무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수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등을 적용합니다.

-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 인원보다 적을 경우(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)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.
- 최종 합격자가 의원면직, 합격 취소,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되지 못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.
- 서류보완은 응시원서 접수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, 접수 기간 이후에는 일절 받지 않습니다.
-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공무원연금법이나 군인연금법,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·군인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합니다.(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1항)
- 본 공고내용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고, 변경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
 - ※ 채용절차 관련 문의 : 인적자원과 인재채용팀 (☎031-228-2795)
 - ※ 담당업무 관련 문의

채용예정분야	담당부서	업무관련 문의
정책홍보	홍보기획관	031-228-2059
시민인권보호관	인권담당관	031-228-2625